

논문 심사 규정

制定: 1990. 11. 24.
改定: 2001. 10. 19.
改定: 2003. 3. 28.
改定: 2004. 4. 23.
改定: 2004. 5. 21.
改定: 2005. 7. 22.
改定: 2005. 9. 9.
改定: 2007. 9. 14.
改定: 2015. 10. 29.
改定: 2016. 10. 20.
改定: 2017. 10. 19.
改定: 2019. 11. 22.

- 제 1 조 격월간(隔月刊)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에 게재하고자 별도로 정한 집필요강 및 투고요령에 의해 투고된 논문원고에 대하여 심사한다.
- 제 2 조 접수된 논문원고는 편집팀(편집위원장, 편집이사, 부문리더)의 판단하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채택불가 또는 논문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고, 해당편집이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 심사위원에게 서류를 갖추어 논문심사를 의뢰한다.
- 제 3 조 논문의 심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편집팀의 책임하에 논문 심사에 3인을 의뢰하여 논문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의견을 받아 최종판정 한다.
- 제 4 조 심사위원의 성명은 대외적으로 비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심사위원의 양해가 있을시 편집팀의 판단하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.
- 제 5 조 심사위원에게 송부된 논문의 심사기간은 2주 이내로 하며, 이 기간이 지나면 심사위원에게 1회 독촉을 한다. 심사의뢰 후 4주가 지나도록 심사결과를 받지 못하면 다른 심사위원으로 변경한다.
- 제 6 조 논문 심사 중 필요하면 편집팀의 중재(仲裁)로 심사위원과 저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- 제 7 조 내용의 수정 보충 등이 요구된 원고가 편집팀 또는 학회 사무국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처리할 수 있다.
- 제 8 조 최종적으로 채택(採擇) 불가(不可)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.